

# Muan Web Contents

2026년 04월 16일 16시 48분



# 목차

목차	2
사용신고	3
대상	3
신고장소	3
구비서류	3
유의사항	3
과태료	3

사용신고	신고사항변경	사용폐지신고
신고필증/번호판/봉인재교부	용어해설	

## 대상

배기량 50cc이상 이륜자동차(측자를 붙인 3륜,4륜 포함)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.

## 신고장소

- 주소지 관할 동은 차량등록민원실에 신고
- 읍·면은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고

## 구비서류

구분		구비서류
공통서류		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제작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수입이륜차 :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</li> <li>▪ 사용폐지 : 사용폐지증명서</li> </ul>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(위임시:위임장,인감증명서, 위임받은자 신분증)
추가 서류	개인	추가서류 없음
	법인	법인등기부등본

## 유의사항

-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,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같은 서류입니다.
-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.

## 과태료

구분	기간	금액
미신고 운행	적발과 동시	50만원
	차체, 원동기, 소음방지, 연료장치,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	20만원

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	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	5만원
	기타 운전장치	3만원

---

COPYRIGHT © MUAN-GUN. ALL RIGHTS RESERVED.

MUAN

# Web Contents

 무안군